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62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홍기원·문진석·권향엽

허 영 • 이건태 • 박지원

한민수 · 신영대 · 김영배

전현희 · 윤종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통학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며 원거리 통학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등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 등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등학생들의 경우 정식 승인된 통학버스가 아닌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 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법률 제 호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2제1항 중 "교육감"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는 교육 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④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 및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0조의12(통학 지원) ① <u>교육감</u>	제60조의12(통학 지원) ① <u>교육감</u>		
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		
	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u>장이 협의하여 정한다.</u>		
<u><신 설></u>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u><신 설></u>	④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		
	및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		
	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u>한다.</u>		
<u>②</u> (생 략)	<u>⑤</u> (현행 제2항과 같음)		